

Legislative & Policy Weekly

#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44** | 2026. 8. 10. (2026. 8. 3. ~ 2026. 8. 9.)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 Summary

## 【정부의 주요 정책】

<산업통상부>는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을 ▲‘키우고’, ▲‘넓히고’, ▲‘다지고’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4대 성장축(메가프로젝트, M.AX, 산업·자원안보, 함께 성장)과 2대 공간축(지역·전세계 경제영토)을 구현하는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① 민생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②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③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④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입법(행정)예고】

<재정경제부>는 자기주식 등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배당을 과세이연하기 위해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상하는 등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상속에 대한 납부유예의 적용대상, 요건 및 한도 등을 정비하고, 주가순자산비율이 유사 업종 대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낮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 평가시점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장주식 평가기간 확대 등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제 및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의무제와 관련하여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 완화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22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전자주주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전자주주명부에 기재된 사항 전부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

대규모 수출금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여 재원을 조성하고, 기금의 지원 규모와 용처를 전략수출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의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

정보통신망 내에서 자행되는 부정한 조작 행위를 정보통신망 질서 교란 행위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금지·처벌하는 전용 규정을 신설하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부정한 조작 방지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4인)**」 ,

항공기·선박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기내식·선식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

국내 소비자와 이용사업자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수수료·정산기한 및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여부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상생 수준을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등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4인)**」 ,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합계와 함께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장소적·조직적 독립성 및 유해·위험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개별 사업장을 별도의 보조·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선정 방법 및 중복지원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1인)**」 ,

건설사업관리의 기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영역의 통합발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0인)**」 ,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를 분리하여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교체의 용이성 등을 극대화한 구조·설비 분리형 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구조·설비 분리형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산자중기위>, <기후노동위>, <국토교통위> 등에서 소관 부처의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목 차

##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산업통상부) ..... 7
-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공정거래위원회) ..... 8

## II. 입법(안) 동향

###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9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9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공정거래위원회) ..... 9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공정거래위원회) ..... 10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 10

###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부) ..... 11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부) ..... 1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부) ..... 11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부) ..... 1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부) ..... 12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국토교통부) ..... 1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정거래위원회) ..... 1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14

###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 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22인) ..... 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 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 17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 ..... 1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3인) ..... 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 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1인) ..... 19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 20
-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 20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 2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4인) ..... 21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 22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4인) ..... 22
-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성민의원 등 12인) ..... 2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 23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1인) ..... 23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 2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 24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 25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희승의원 등 10인) · 25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1인) ..... 26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3인) ..... 27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0인) ..... 27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0인) ..... 27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0인) ..... 28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 28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 29

###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 1. 위원회 일정

###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43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금융] 책무구조도, 도입을 넘어 실효적인 운영이 중요합니다
- [자본시장] 중복상장 관련 거래소 규정 및 가이드라인 확정 및 시행
- [환경] 2026년 7월 기후환경 법규 업데이트 리포트
- [방송통신(TMT)] 정부 AX 사업과 민·관의 AI 자원, 국내 AI 기업 및 솔루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AX 원스톱 지원 포털 『AX360°』 서비스 개시
- [조세] 2026년 세제개편안 I: 법인과세 분야
- [조세] 2026년 세제개편안 II: 자산과세 분야
- [공정거래] 채무보증 및 일반지주회사 산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등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과 시사점

##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산업통상부 | <b>「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b><br>- 4대 성장축과 2대 공간축으로 산업·통상·자원의 양적·질적 성장 촉진<br>- 진짜 성과 창출을 위해 장관 직속 ‘정책성과혁신단(정성단)’ 가동 | 2026-08-04 |
|-------|------------------------------------------------------------------------------------------------------------------|------------|

산업통상부는 ‘초(超)성장 + 신(新)공간, 대체불가 산업강국’을 주제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음. 산업·통상·자원을 ▲‘키우고’, ▲‘넓히고’, ▲‘다지고’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4대 성장축(메가프로젝트, M.AX, 산업·자원안보, 함께 성장)과 2대 공간축(지역·전세계 경제영토)을 구현하는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                                                                                                                                                                                                                                                                                                                                                                                                                                                                                                                                                                                                                                                                                                                                                                                                                                                                                                                              |              |
|-------|------------------------------------------------------------------------------------------------------------------------------------------------------------------------------------------------------------------------------------------------------------------------------------------------------------------------------------------------------------------------------------------------------------------------------------------------------------------------------------------------------------------------------------------------------------------------------------------------------------------------------------------------------------------------------------------------------------------------------------------------------------------------------------------------------------------------------------------------------------------------------------------------------------------------------|--------------|
| 비전    | 초[超]성장 + 신[新]공간, 대체불가 산업강국                                                                                                                                                                                                                                                                                                                                                                                                                                                                                                                                                                                                                                                                                                                                                                                                                                                                                                   |              |
| 목표    | ▶ 3대 메가프로젝트와 M.AX를 新성장동력으로 육성<br>▶ 권역별 성장엔진으로 지역주도 성장 본격화<br>▶ 글로벌 산업·경제 안보 협력을 주도하는 리더십 확보                                                                                                                                                                                                                                                                                                                                                                                                                                                                                                                                                                                                                                                                                                                                                                                                                                  |              |
| 추진 전략 | <div><div>4대 성장축</div><div><div><div>① 성장 대도약</div><div><ul style="list-style-type: none"><li>반도체 클러스터 전국화</li><li>AI 로봇 글로벌 3강</li><li>AI DC 생태계 육성</li></ul></div></div><div><div>② 성장 가속화</div><div><ul style="list-style-type: none"><li>M.AX 확산</li><li>첨단산업: 초격차</li><li>주력산업: 고도화</li></ul></div></div></div><div><div><div>① 지방주도 성장</div><div><ul style="list-style-type: none"><li>권역별 성장 본격화</li><li>메가특구 규제특례</li><li>AI·그린 대전환</li></ul></div></div><div><div>② 경제영토 확장</div><div><ul style="list-style-type: none"><li>상호이익 창출</li><li>글로벌 성장 주도</li><li>신산업협력 발굴</li></ul></div></div></div><div><div><div>③ 성장 안전망</div><div><ul style="list-style-type: none"><li>원유·광물 수급 안정</li><li>경제안보 강화</li><li>산업자원안보 지원체계 보완</li></ul></div></div><div><div>④ 함께 성장</div><div><ul style="list-style-type: none"><li>협력업체 지원 강화</li><li>사업재편 가속화</li><li>성장사다리 구축</li></ul></div></div></div><div>2대 공간축</div></div> |              |
|       | 추진 체계                                                                                                                                                                                                                                                                                                                                                                                                                                                                                                                                                                                                                                                                                                                                                                                                                                                                                                                        | 이행점검<br>소통강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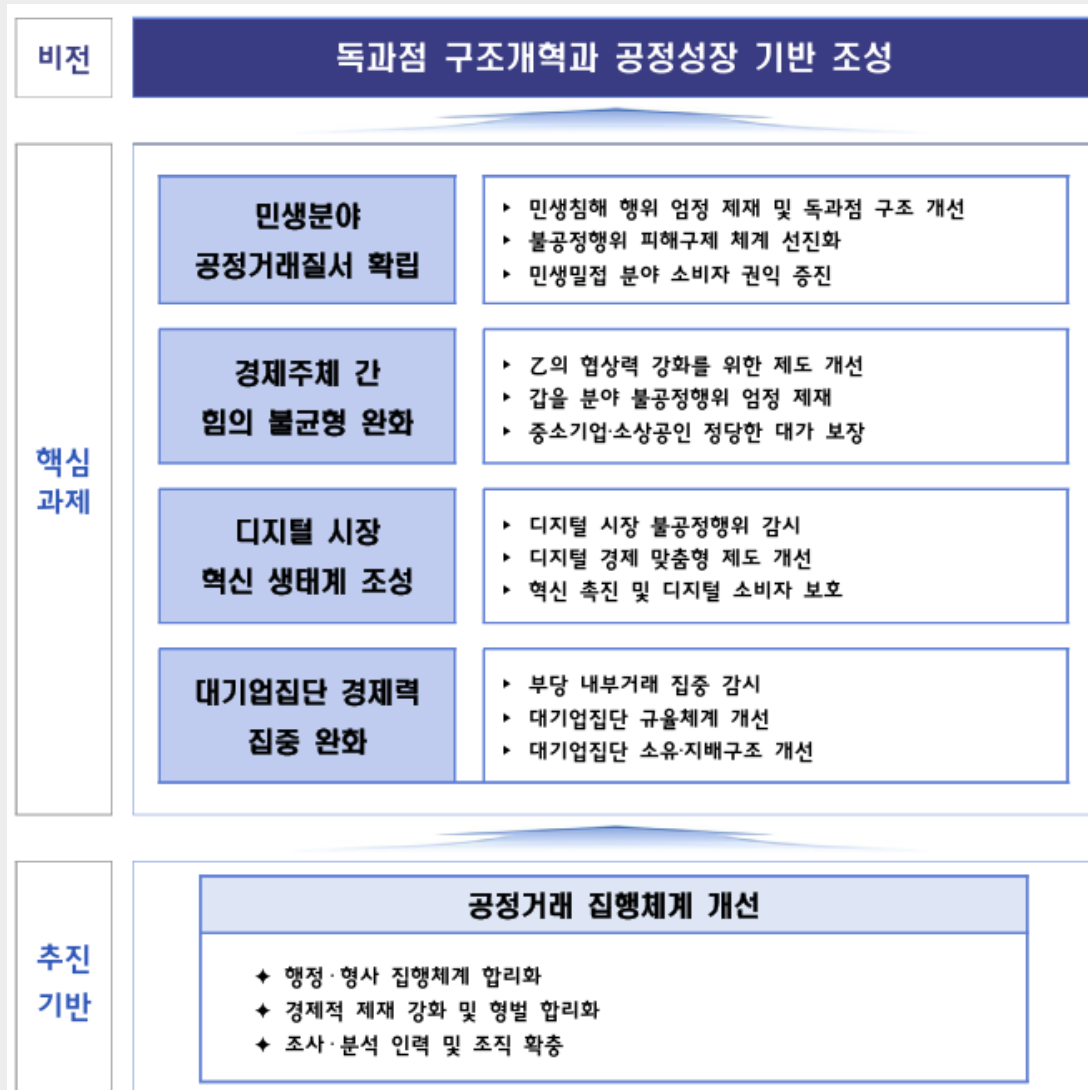
공정거래위원회

##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

2026-08-04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음

공정위는 금년 상반기에 담합 등 민생경제 침해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였음. 올해 하반기에는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① 민생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②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③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④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II. 입법(안) 동향

###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처명   | 예고 법령안                            | 시행일자          |
|-------|-----------------------------------|---------------|
| 국토교통부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 2026-08-04 시행 |

주택단지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구분 기준을 정하고, 서로 연접하지 않은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을 허용하며,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주민대표단과 협약 등을 체결한 자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22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 요건, 주민대표단 구성·승인 절차 및 예비사업시행자의 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               |
|-------|---------------|---------------|
| 국토교통부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2026-08-04 시행 |
|-------|---------------|---------------|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효율화하기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통합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성능위주설계평가 및 재해영향평가가 추가되고,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중 자연재난의 발생으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며, 해당 감리를 받은 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21323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통합 검토 및 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위원 수를 조정하고, 감리자가 감리업무 시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대상 기준을 정하며, 현장점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               |
|---------|------------------------------|---------------|
|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2026-08-04 시행 |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과 기재사항별 변경등록 기한을 개편하는 한편,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추가하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관련 서식을 정하며, 법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8-11 시행 예정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으로 주요 에너지 비용을 추가하고, 건설하도급 관련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예외사유를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40호, 2026. 2. 10. 공포, 8. 11. 시행)됨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발급해야 하는 서면에 주요 에너지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고, 건설하도급 관련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예외사유를 정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촉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 등의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

#### 금융위원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8-04 시행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공유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의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회사 등 사기정보제공기관은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사기정보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체 분석·생성한 정보를 금융회사 등 사기정보이용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20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사기정보제공기관의 범위,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및 사기정보이용기관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처명   | 예고 법령안        | 의견접수기간                      |
|-------|---------------|-----------------------------|
| 재정경제부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8.04.<br>~2026.08.20. |

법인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명문화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의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한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을 75%로 상향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각급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고충민원의 처리’를 명시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탈루세액 등 신고 포상금의 한도액을 폐지하는 한편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 제보를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탈세 등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전화: 044-215-4154, 팩스: 044-215-8060)

|       |              |                             |
|-------|--------------|-----------------------------|
| 재정경제부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8.04.<br>~2026.08.20. |
|-------|--------------|-----------------------------|

자기주식 등을 자본으로 보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반영하여 자기주식 등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배당을 과세이연하기 위해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하며,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상하고,

친환경차 사용 촉진을 위하여 업무용 전기·수소 승용차의 연간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를 우대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서 거래 가능한 상품에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팩스: 044-215-8073)

|       |                    |                             |
|-------|--------------------|-----------------------------|
| 재정경제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8.04.<br>~2026.08.20. |
|-------|--------------------|-----------------------------|

원활한 가업의 상속을 지원하되 지원 제도를 활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상속에 대한 납부유예의 적용대상, 요건 및 한도 등을 정비하고, 최대주주가 상장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행위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주가순자산비율이 유사 업종 대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낮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 평가시점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장주식 평가기간 확대 등 평가방법을 개선하며,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을 장애인신탁에 신탁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mailto:재정경제부_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

## 재정경제부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2026.08.20.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가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를 가산세 감면 사유로 추가하고, 성실한 납세신고를 위해 각 과세연도별로 신고납부한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관세사 등의 확인·검증을 받는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도입하며,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유인 제고를 위해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는 한편,

원활한 물자 수급을 위해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특허보세구역 반출명령 허용 및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기한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며, 마약류 등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항 및 항만시설의 출입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mailto:재정경제부_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

## 재정경제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2026.08.20.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국내생산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공제율 등을 우대하고,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에 대한 세제지원의 남용을 방지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계과세의 경우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등 감면요건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면서 감면세액의 일부를 해당 지역에 지출하도록 유도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고, **녹색전환 및 경제안보** 지원을 위하여 **태양광 발전, 이차전지 등 분야 내에서 녹색전환 및 경제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며,

**중소·중견기업의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하여 **피승계기업의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및 승계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을 확대**하며, 생산적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및 지급액을 인상**하며, 비과세·감면제도를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2027년 반출되는 경우 200만원, 2028년 반출되는 경우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중 대중교통이용분을 별도 공제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mailto: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팩스: 044-215-8063)

국토교통부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안2026.08.06.  
~2026.09.15.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 촉진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민홍철 의원)이 제정됨(2026.4.7.)에 따라, 제정 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① 기본계획 (안 제2조)

-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 변경 시 의견청취·관보고시 등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으로 단순오기 등 명백한 오류·법령제정 등에 따른 내용변경·기본계획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규정함

#### ②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등 (안 제3조~제12조)

- 지역지정·변경·지정해제의 절차·제출서류 및 변경지정의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요건을 규정함. 또한,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변경 시 ‘경미한 사항’을 규정함

#### ③ 기업지원 (안 제13조)

- 국가·지자체가 우선 지원하는 기반시설의 범위·지원 내용을 구체화함

## ④ 규제특례 (안 제14조~제25조)

- 규제의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의 신청·변경 등 절차를 규정하고 규제특례의 대상인 물류관련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 또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⑤ 정보플랫폼 (안 제26조 및 제27조)

-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전화: 044-201-3998, 팩스: 044-201-5601\)](tel:044-201-3998)

##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8.03.  
~2026.09.14.

가맹사업법 개정('25.12.국회 통과, '26.12.시행 예정)에 따라 도입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제 및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의무제와 관련하여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 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비율요건을 10%(단, 30명 이상일 것), 최소 가입 수 요건을 1,000개로 설정하고 그 외 세부사항을 고시에 위임함 (안 제15조의3)
- ②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필요한 절차 및 기한을 설정하고 그 외 세부사항을 고시에 위임함 (안 제15조의4)
- ③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취소와 관련하여 법정 취소 사유의 예시를 제시하고 그 외 세부사항을 고시에 위임함 (안 제15조의5)
- ④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협의의무와 관련하여 협의요청 대상 주제 및 의견수렴절차 등을 규정하고 그 외 세부사항을 고시에 위임함 (안 제15조의2)

※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전화: 044-200-4991, 팩스: 044-200-5226\)](tel:044-200-4991)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8.03.  
~2026.08.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6. 3. 31. 개정)을 반영하여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6. 10. 1. 시행)을 마련하기 위함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조치 기준 규정 (안 제62조의4 및 별표 3의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조치하여야 할 구체적 기준’을 규정

② 과징금 산정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64조의2 및 별표 3의3)

- 법 제50조의9의 위임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위한 매출액 산정 시 위반행위가 있었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
- 과징금 산정기준과 절차, 위반행위별 중대성 정도(매우 중대·중대·보통)에 따른 부과기준율(매출액의 1%~6%) 및 기준금액(1억 원~20억 원) 등을 규정
- 매출액 산정, 중대성 판단, 가중·감경을 위한 세부기준은 고시에 위임

③ 과징금의 납부 및 독촉, 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등 규정 (안 제64조의3부터 제64조의5)

- 법 제50조의9 제7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 및 독촉,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50조의10의 위임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담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④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안 제65조)

- 인터넷진흥원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업무수행 사항 중 불법적 전송 방지 관련 ‘대책 연구’를 정책연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책 연구 및 정책 지원’으로 개정

⑤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안 별표 9 도록)

- 제50조의3 제1항 및 제76조 제2항 제9호의3 신설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9)에 해당 위반행위의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규정

※ 문의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tel:02-2110-1536) (전화: 02-2110-1536, 팩스: 02-2110-0140)

###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2026-08-05 발의

현행법 제542조의6제2항에 따르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 1천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음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은 회사의 경영에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임.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시가총액이 큰 상장회사일수록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주식의 취득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가 사실상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 완화**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회사 경영에 대한 주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542조의6제2항)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22인)

2026-08-04 발의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논의와 함께, 투자정보로서 전통적인 재무적 지표 외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EU,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은 기업들이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자 함.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아울러 공시의무화 도입 초기 3년동안 행정, 민사 및 형사책임에 대한 면책과 지속가능성 공시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추정정보, 예측정보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된 경우 제도적 면책을 도입하여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고자 함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2026-08-05 발의

현행 「상법」에 따르면 전자주주명부의 작성은 회사의 임의사항이며, 전자주주명부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도 대통령령에 따라 다른 주주의 열람 및 등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주가 다른 주주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어려워 주주 간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이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전자주주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전자주주명부에 기재된 사항 전부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적 방식의 주주총회 소집 및 안내를 활성화하고, 주주 간 의사소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안 제165조의21 신설)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2026-08-05 발의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공급망 위험 등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기업가치와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주요국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등을 반영한 법정공시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정보는 주로 거래소 공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적 구속력과 정보의 신뢰성·비교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으며, 공시 오류에 대한 책임 범위도 명확하지 않아 기업의 불확실성을 가중할 우려가 있음

이에 환경·사회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등록된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업의 자산규모에 따라 공시와 인증 의무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며, 시행 초기 3개 사업연도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과징금을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

2026-08-05 발의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함)에게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기한을 정하고 있지만,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상품을 납품·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 또는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거래 현실에 비해 지급기한이 길다는 지적이 있음

더욱이 최근 대규모 유통업체의 경영 악화, 회생절차 신청, 정산 지연 등으로 인해 납품업자 및 입점사업자가 상품을 공급하고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 신선도 유지, 유통기한의 제약, 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농업인, 농업법인, 영세 납품업체의 경영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지급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상품을 납품·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 또는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부터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25일 이내로 단축하되, 상품대금을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자등의 대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유통시장의 거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8조)

## 정무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3인)

2026-08-07 발의

현행법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에 관한 규정과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모펀드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투자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자산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탁업자를 통한 최소한의 외부 견제 장치를 마련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의 범위에서 제238조와 제247조를 완전히 삭제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49조의20제1항)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2026-08-03 발의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관세 전쟁 등 높은 대외 불확실성과 잠재 성장률 하락 등 경기 침체로 향후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자금여력이 있는 내국법인의 벤처 투자 유입 촉진을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①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함 (안 제13조)
- ②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내국법인의 벤처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함 (안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

####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2026-08-04 발의

현행법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판은 지식문화의 근간이자 웹툰·영화·방송 등 다양한 콘텐츠의 창작과 제작을 뒷받침하는 K-콘텐츠 산업의 기반이며, 음악과 게임 역시 국가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 분야임. 그럼에도 출판, 음악 및 게임콘텐츠는 현행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문화콘텐츠 전반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출판, 음악 및 게임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K-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의원 등 11인)

2026-08-04 발의

현행법은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2024년에 시행령의 개정으로 벤처투자조합 중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는 신주 투자분에 대하여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범위가 제한됨

그런데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은 자산의 60% 이상을 중소·벤처기업의 합병, 구주 인수, 벤처펀드 지분인수 및 출자에 투자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의 중간회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데, 소득공제의 축소는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거주자가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와 같이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1항)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2026-08-04 발의

현행법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은 주주등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그 밖의 관련 지출을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사주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사적으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의 임차료·관리비·유지비 등을 법인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의 구체적인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과세관청이 그 사용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고, 사적 사용 여부를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주택 및 그 관련 비용의 범위를 정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사적으로 사용하게 한 주택의 관련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별 사용자·사용기간 및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고, 과세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2026-08-05 발의

최근 방위산업 성장세 등에 따른 대규모 수출 증가 전망과 수출금융기관의 신용공여한도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수출금융 지원 체계만으로는 대규모 수출을 적기에 지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아울러 수출금융 지원이 방위산업·조선해양·원자력 등 산업별로 상이한 수요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규모 수출금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여 재원을 조성하고, 기금의 지원 규모와 용처를 전략수출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별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026-08-03 발의

최근 고성능 인공지능 모델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공지능을 악용한 사이버공격, 대규모 허위정보 생성·유포, 국가 중요 데이터 침해 등 새로운 형태의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 및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가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을 지정·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고영향 인공지능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핵심 기반시설과 국민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제33조의2, 제3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4인)

2026-08-05 발의

최근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등)과 대리계정을 악용하여 포털 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SNS 등의 검색순위, 상품 평점, 이용 후기, 조회수 및 추천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특히 대가를 지급하고 타인의 계정을 대여·양수하거나 도용하여 허위 리뷰 작성 및 검색어 조작에 악용하는 이른바 ‘대포계정’ 기반의 조작 행위가 점차 조직화·산업화되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 법 체계는 이러한 신종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데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어 수사기관의 인지 수사를 통한 즉각적인 사법 처리가 어렵고, 공정위의 처벌 선례 부재 등으로 고발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통한 처벌은 피해자인 플랫폼 사업자의 직접적인 피해 입증 및 고소가 필수적이어서 수사의 신속성과 실효성이 크게 저해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역시 계정도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처벌할 뿐 정보통신망 내 ‘거짓 정보 생성 및 후기 조작’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망 내에서 자행되는 부정한 조작 행위를 정보통신망 질서 교란 행위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금지·처벌하는 전용 규정을 신설하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부정한 조작 방지의무를 부여해 부정한 정보 유통으로부터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및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48조의11 신설 등)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2026-08-03 발의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에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항공기와 선박에서 제공되는 기내식·선식은 한 번에 수백 명의 승객에게 제공되는 집단급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제공받는 음식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 외에 **항공기·선박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기내식·선식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5조제3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4인)

2026-08-03 발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재화·용역 거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거래상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입점업체(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거래상 종속성이 심화되는 반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내 소비자와 이용사업자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수수료·정산기한 및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여부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상생 수준을 계량화하여 평가하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상생협의체를 제도화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대금 정산기한 단축, 온라인 플랫폼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데이터 공유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계약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노력을 규정하고, 우수 중개사업자에 대한 우대 조항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촉진하고자 함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역량 제고와 경영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                                                           |                      |
|-----------------------------------------------------------------------------------------------------------------------------------------------------------------------------------------------------------------------------------------------------------------------------------------------------------------------------------------------------------------------------------------------------------------------------------------------------------------------------------------------------------|-----------------------------------------------------------|----------------------|
| <b>산업통상자원<br/>중소벤처기업위원회</b>                                                                                                                                                                                                                                                                                                                                                                                                                                                                               | <b>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br/>특별법안(박성민의원 등 12인)</b>     | <b>2026-08-04 발의</b> |
| <p>최근 전세계적으로 자율주행, 전기·수소 자동차 등 미래자동차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국가 간 기술경쟁 및 시장점유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중이나, 이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한정된 지원으로 자동차제작까지 포함한 미래자동차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p> <p>이에 미래자동차의 개발·설계·제조·조립·유통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의 공급 등을 포괄하는 미래자동차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 기술개발, 구매 활성화 등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p>                                                                                                                                                           |                                                           |                      |
| <b>산업통상자원<br/>중소벤처기업위원회</b>                                                                                                                                                                                                                                                                                                                                                                                                                                                                               | <b>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br/>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b> | <b>2026-08-04 발의</b> |
| <p>현행법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우선 공공조달, 수출유망 중소기업·품목에 대한 우선 정부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지역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보 사업 추진 시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p> <p>그런데 TV홈쇼핑 입점지원 대상 업체 선정 시 지역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등 판로지원사업의 시행 단계에서 지역의 특성·여건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수혜자가 대도시권 중소기업에 편중되고 있어, 지역 우선 지원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해 판로지원기관이 소외된 지역을 지원하고 그 실적을 관리·제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지역 특산물이나 인구감소지역 생산 물품 등에 대한 우선지원을 의무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판로지원기관의 우선지원 내용·실적을 종합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판로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30조의2)</p> |                                                           |                      |
| <b>산업통상자원<br/>중소벤처기업위원회</b>                                                                                                                                                                                                                                                                                                                                                                                                                                                                               | <b>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br/>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1인)</b>     | <b>2026-08-05 발의</b> |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및 공급망 다변화 등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개별 중소기업의 미약한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거래 조건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거래조건 및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발적으로 상생 협력에 동참하는 대기업(원사업자)에 대해 확실한 법적·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즉 규제와 의무 강제가 아닌 확실한 인센티브를 법률로써 보장함으로써, 대기업이 스스로 상생 협력의 파트너로서 협상 테이블에 자발적·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가점,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R&D) 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정기 세무조사 및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유예** 등 대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실리적 우대 패키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규제가 아닌 시장친화적인 자율적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진정한 파트너십과 양질의 국내 공급망 안보를 확립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의4 신설 등)

#### 보건복지위원회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2026-08-06 발의

최근 성수기·연휴 및 대규모 행사 등 기간에 바가지 숙박요금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숙박업소에서는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가격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등으로 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숙박요금의 시기별 운영에 대한 신고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취소 금지 등에 관한 규율이 명확하지 않아 예방·단속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숙박업자의 숙박요금 신고 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는 숙박예약 일방 취소 금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숙박요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2026-08-03 발의

현행법은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 통상임금에 일정 비중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를 제공한 실제 시간을 산정하지 않고 미리 포괄적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단기소멸시효로 인해 임금체불로 인한 임금채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관련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임금채권에 대한 민사적 권리구제기간인 소멸시효도 이에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 임금계약을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2 신설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2026-08-03 발의

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기준 중 하나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이 이를 열람한 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절차는 공고·열람·의견제출에 그치고 있어, 주변지역 주민들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생활환경상 영향, 안전 우려 등을 충분히 이해한 뒤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민들은 생활상 불편, 안전 우려, 주거환경 변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실질적인 주민 설명과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함

이에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주민들이 사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7조)**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희승의원 등 10인)

2026-08-04 발의

탄소중립 실현이 세계적 과제로 자리 잡으면서 주요 국가와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RE100 등 재생에너지 사용은 새로운 시장질서이자 공급망 참여의 필수요건으로 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입지 특성상 새만금을 포함한 서남권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반면, 대규모 전력수요는 수도권 등에 집중되어 장거리 송전망 확충에 막대한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고 송전선로를 둘러싼 지역 갈등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인근에 산업단지, 정주시설, 송·배전시설 등을 연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여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하는 지산지소(地產地消)형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특히 재생에너지 기반시설이 이미 구축되고 대규모 기업 투자가 확정된 준비된 지역을 시범 재생에너지자립도시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정과제의 조기 성과 창출을 도모함. 아울러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주로 농산어촌에 입지하는 반면 그 편익은 산업단지와 도시에 집중되어 입지 지역주민의 수용성 저하가 재생에너지 확대의 구조적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설비 입지 시·군을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로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며, 개발이익의 주민지원사업 재투자,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우대, 영농형 태양광 지원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생산 기여 지역이 재생에너지 전환의 직접적 수혜자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기업의 RE100 이행, 송전망 부담과 사회적 갈등의 완화,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1인)

2026-08-05 발의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정부가 사업주·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산업재해 예방 전문단체 및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지원 대상의 선정 과정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사업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주가 여러 공동주택 관리현장 등 장소적으로 분리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개별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적고 해당 현장에 추락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더라도 사업주가 경영하는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에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합계와 함께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장소적·조직적 독립성 및 유해·위험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개별 사업장을 별도의 보조·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선정 방법 및 중복지원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작업현장의 규모와 산업재해 위험에 부합하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 재정지원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158조제2항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3인)

2026-08-03 발의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물류 중심지를 조성 및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어 2027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물류·제조·유통 간 경계파괴, 국제전자상거래 시장 팽창 등 물류환경이 급변하고, 각종 산업에서 물류의 중요성이 증가하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서 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재 시행예정인 법률의 규정만으로는 국제물류 중심지를 조성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특례 강화, 예비타당성 면제 등 국제물류진흥구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제물류 중심지의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25조의2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0인)

2026-08-03 발의

현행법은 건축물의 정기점검 제도를 두고 화재안전성능 등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용도, 규모, 건축자재, 구조, 피난·방화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화재위험도를 등급화하는 체계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공장·창고 등 산업시설은 화재 발생 시 가연성 건축자재와 복잡한 내부 구조, 피난동선 훼손 등이 결합되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기존 제도는 다중이용시설이나 피난약자 이용시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산업시설의 화재위험을 사전에 선별·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공장·창고·물류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화재위험등급을 설정하고, 관리자가 화재위험등급에 따라 필요한 보수·보강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화재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자 함 (안 제29조의3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0인)

2026-08-03 발의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각 공사현장이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건설공사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면서 과업기간을 공사기간보다 짧게 정하거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통합 발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사업관리의 기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통합발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39조제2항 및 제4항 등)**

국토교통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0인)**

2026-08-05 발의

현행법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적합성 승인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적합성 승인 및 등록 주체는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음

그런데, 자율주행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는 개별 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이들이 구성한 운송사업자단체(조합)가 주도하여 자율주행 자동차를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다만, 조합이 적합성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더라도 실제 차량의 소유 및 관리 책임이 있는 개별 조합원이 「자동차관리법」상의 등록 주체가 되어야 하는 행정적 실무를 고려하여야 할 것임

이에 **적합성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단체를 신설하여 자율주행차 운행 주체를 확대하고, 조합이 적합성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차량 등록을 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적합성 승인의 효력이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명시함으로써 자율주행 서비스 공급 체계의 유연한 전환을 도모하고, 현행 등록 제도와 유기적 연계를 통해 행정적 집행력을 담보하려는 것임 (안 제41조)**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2026-08-07 발의

현행법은 건축물의 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장기간 사용 및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유도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등 건축물들은 급수·배수·전기·통신 등 주요 건축설비가 바닥이나 벽체에 매립되어 있어 유지보수 및 교체가 용이하지 않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설되어 철골구조에 비하여 구조변경이 쉽지 않아 리모델링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로 인해 30년 주기로 대규모 재건축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투기 수요를 야기하여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대형 건설사 등 간의 고착화된 카르텔 형성을 조장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를 분리하여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교체 용이성 등을 극대화한 구조·설비 분리형 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구조·설비 분리형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조·설비 분리형 건축물의 건축을 촉진하고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항제22호 및 제68조의4 신설)

성평등가족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2026-08-07 발의

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이러한 성별임금격차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약하고 경력단절을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행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표 제도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민간 사업장에 대하여도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을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고용분야의 성평등 관련 정보 공개와 관련해 개별법에서 파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성평등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로 하여금 고용분야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 반영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안 제19조의2,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6까지 및 제55조 신설)

###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 1. 위원회 일정

| 구분     |                 | 일시            | 내용                           |
|--------|-----------------|---------------|------------------------------|
| 산자증기위  | 전체회의            | 8/12(수) 10:00 | - 2025회계연도 결산, 업무보고, 통상 현안보고 |
| 기후노동위  | 전체회의            | 8/11(화) 10:00 | - 간사 선임의 건, 업무보고             |
|        | 전체회의            | 8/12(수) 10:00 | - 업무보고                       |
| 국토교통위  | 전체회의            | 8/11(화) 14:00 | - 업무보고                       |
| 기후위기특위 | 탄소중립기본법<br>심사소위 | 8/10(월) 10:30 | - 법안 심사                      |
|        | 전체회의            | 8/13(목) 10:00 | - 법안 의결                      |
| 외통위    | 전체회의            | 8/11(화) 14:00 | - 간사 선임의 건                   |
| 농해수위   | 농림축산식품<br>법안소위  | 8/11(화) 10:00 | - 안건 심사                      |

##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 구분              | 일시               | 내용                                                                           | 주최               | 장소             |
|-----------------|------------------|------------------------------------------------------------------------------|------------------|----------------|
| 토론회<br>및<br>세미나 | 8/10(월)<br>10:00 | 생성형 AI 시대의 지속가능한 음악산업을 위한 창작자 보호와 합리적 보상 체계                                  | 김재원 의원실          | 의원회관<br>대회의실   |
|                 | 8/10(월)<br>10:00 |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 사고책임과 국민안전 체계는 준비됐나                                              | 박상혁·김영진<br>의원실 등 | 의원회관<br>3세미나실  |
|                 | 8/10(월)<br>10:00 |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서울시<br>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                         | 이용선 의원실          | 의원회관<br>2세미나실  |
|                 | 8/10(월)<br>14:00 | (공공AI도입을 통한) 국가 AI대전환 촉진 2차 국회 토론회                                           | 이주희 의원실          | 의원회관<br>8간담회의실 |
|                 | 8/10(월)<br>14:00 |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환자 목소리는 충분했습니까?:<br>의료분쟁 현황, 의료분쟁조정법의 과제 및 제도 개선을 위<br>한 국회토론회 | 이소희 의원실          | 의원회관<br>2세미나실  |
|                 | 8/11(화)<br>10:00 |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과 안전보건공시제 시대의 개막                                                 | 염태영·민병덕<br>의원실 등 | 의원회관<br>2소회의실  |
|                 | 8/11(화)<br>14:00 | 2026 K-기후 에너지환경&수소환원제철 세미나                                                   | 신정훈 의원실          | 의원회관<br>7간담회의실 |
|                 | 8/12(수)<br>14:00 |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br>국회 5회 연속 토론: 농지 세제 개편                      | 문금주·서삼석<br>의원실 등 | 의원회관<br>5간담회의실 |
|                 | 8/12(수)<br>14:00 | 미래세대를 위한 ESG 기후위기대응 아동권리지표 및 가<br>이드라인 발표                                    | 박정현 의원실          | 의원회관<br>2세미나실  |
|                 | 8/14(금)<br>10:00 | 대한민국 반도체 미래지도와 인프라 전략 Part2. 용수: 반<br>도체 미래와 생존을 위한 연속 토론회                   | 주호영 의원실          | 의원회관<br>2세미나실  |
| 자료집<br>등        | 8/10(월)          | 「최신외국정책정보」 제2026-10호(통권 제34호)                                                | 국회도서관            |                |
|                 | 8/12(수)          | 「금주의 서평」 제2026-31호(통권 제790호)                                                 |                  |                |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43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시     | 내용                             | 주최    | 장소 |
|----------|--------|--------------------------------|-------|----|
| 자료집<br>등 | 8/4(화) |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6-15호(통권 제303호) | 국회도서관 |    |
|          | 8/5(수) | 「금주의 서평」 제2026-30호(통권 제789호)   |       |    |

##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 분야        | 내용                                                                            |
|--------|-----------|-------------------------------------------------------------------------------|
| 8/3(월) | 금융        | 채무구조도, 도입을 넘어 실효적인 운영이 중요합니다                                                  |
| 8/5(수) | 자본시장      | 중복상장 관련 거래소 규정 및 가이드라인 확정 및 시행                                                |
| 8/6(목) | 환경        | 2026년 7월 기후환경 법규 업데이트 리포트                                                     |
| 8/7(금) | 방송통신(TMT) | 정부 AX 사업과 민·관의 AI 자원, 국내 AI 기업 및 솔루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AX 원스톱 지원 포털 『AX360°』 서비스 개시 |
| 8/7(금) | 조세        | 2026년 세제개편안 I: 법인과세 분야                                                        |
| 8/7(금) | 조세        | 2026년 세제개편안 II: 자산과세 분야                                                       |
| 8/7(금) | 공정거래      | 채무보증 및 일반지주회사 산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등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과 시사점                |

##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남형기 | 고문

프로필보기



윤형중 | 고문

프로필보기



김건훈 | 수석전문위원

프로필보기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이승상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